

#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1. 6.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



# 목 차

[1] 제정 목적 및 취지 .....	1
[2] 용어 정의 .....	1
[3] 적용 기준 .....	3
[4] 직무분리 .....	4
1. 직무구분 .....	4
2. 거래실행부문 .....	4
3. 사후관리부문 .....	6
4. 리스크관리부문 .....	7
5. 내부감사 .....	8
6. 전산시스템 .....	8
[5]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	10
1. 절차 및 방법 .....	10
2.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	17
[6] 파생상품거래위험대비 적정자기자본의 보유 .....	18
[7] 가치평가방법 .....	19

<b>[8] 업무취급시 유의사항</b> .....	22
1. 가격의 적정성 .....	22
2. 거래의 적정성 .....	23
3. 담보관리의 적정성 .....	24
4. 법적 적정성 .....	25
5. 새로운 상품취급 .....	27
<b>[9] 영업시 유의사항</b> .....	28
<b>[10] 파생상품 거래의 보고 및 공시</b> .....	30
1.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30
2. 재무정보의 공시 .....	30
3. 수시공시 .....	30
<b>[11] 전문성의 유지 및 성과평가</b> .....	32
1. 전문성의 유지 .....	32
2. 성과평가 .....	33
<b>[12]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b> .....	34
<b>[13] 기타</b> .....	38

## 참고 목차

<참고1> 표준방법에 의한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	41
<참고2>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 산출 방법 .....	45
<참고3>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상계의 인정범위 .....	50
<참고4> 파생상품의 결제전 리스크 측정 .....	52
<참고5>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이전기준 .....	54
<참고6> 운영리스크 관련 손실사건 유형 .....	56
<참고7>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	58
<참고8> 평가모형에 의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확보방법 .....	61
<참고9> 장외파생상품의 담보관리절차 .....	62
<참고10> 영업 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 예시 .....	73
<참고11>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관련 세부기준 .....	74
<참고12> 내재파생상품의 개념 및 분리회계 .....	76
<참고13> 위험회피회계 적용 및 중단 요건 .....	77
<참고14> 장외파생상품 적색경고제 .....	79
<참고15> ELS 발행 및 운용기준 .....	80
<참고16>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기준 관련 법규정 .....	82



## [1] 제정 목적 및 취지

1-1-1.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및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향해야 할 목표 수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 정의

2-1-1.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등과 같이 파생상품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이 「모범규준」의 대상으로 한다.

나. “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다.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마. “거래실행부문(front office)”은 직접 자기명의로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부문으로 트레이딩, 금융공학부문 및 영업부문(sales)을 포함한다.

바. “사후관리부문(back office)”은 파생상품거래시 회계처리, 결제처리, 거래대사(reconciliation), 보고서 작성 등 제반 사후관리 및 지원업무를 포함한다.



- 사. “리스크관리부문(middle office)”은 파생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시장·신용·운영 및 유동성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부문을 포함한다.
- 아. “시장리스크”란 금리, 주가, 환율 등 기초자산이 불리하게 변동할 위험을 말한다.
- 자. “신용리스크”란 거래상대방 등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고의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말한다.
- 차.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말한다.
- 카. “유동성리스크”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청산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 타. “결제리스크”란 파생상품 계약에 의거 거래 쌍방이 동시에 자금이체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되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먼저 이행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 파. “결제전리스크”란 계약기간동안 거래상대방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짐으로써 입게 될 손실위험을 말한다.
- 하. “백투백거래”란 금융회사가 보유(또는 보유예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시장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수익구조의 반대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를 말한다.
- 2-1-2.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자본시장법·시행령·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3] 적용 기준

3-1-1. 이 「모범규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파생상품(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상품 포함)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며, 일부 조항은 금융회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취득 금융회사 (A) :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중개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나. 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중개업 인가 미취득 금융회사 (B) : ‘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파생상품투자를 현물상품의 대체상품으로서 이용하거나 파생상품거래를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3-1-2. 이 「모범규준」의 개별조항 끝에 표시된 (A)는 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취득 금융회사, (B)는 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중개업 인가 미취득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을 의미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관리수준이 중복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실정에 맞는 조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1-3.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취급과 관련한 제반 법령, 규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1-4.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이 「모범규준」의 내용을 관련 법령 또는 기준의 취지에 맞도록 해외본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4] 직무분리

### 1. 직무구분

- 4-1-1.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직무는 거래실행부문(front office), 사후관리부문(back office) 및 리스크관리부문(middle office)으로 구분한다.<sup>1)</sup>
- 4-1-2. <4-1-1>과 관련하여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및 리스크관리부문을 분리하는 수준 및 부문의 구성은 금융회사의 트레이딩 운용규모, 인력 상황 및 경영진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4-1-3. (A)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을 본부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 4-1-4. (B)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을 최소한 부서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 4-1-5. <4-1-3> ~ <4-1-4>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사후관리부문을 거래실행부문 또는 리스크관리부문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능간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4-1-6. 파생상품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분석 등 신용위험관리는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2. 거래실행부문

- 4-2-1. 트레이더는 자신의 포지션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으로 거래한도 및 손실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4-2-2. 금융회사는 금융공학담당자를 거래실행부문에서 분리하여 파생상품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문들의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부문에서 수행하는 업무상의 구분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영업점에서 취급한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점이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4-2-3. 금융회사<sup>2)</sup>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장외파생상품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4-2-4. 거래실행부문은 파생상품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파생상품거래 가격결정, 평가 및 관리(헤지비율, 손익, 리스크 등)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4-2-5. <4-2-4>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거래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B)
- 4-2-6. 거래실행부문은 일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후관리 및 리스크관리부문에 거래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 4-2-7. 거래실행부문은 거래 및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거나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4-2-8. 거래실행부문은 전화를 통한 거래 시에는 녹음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A)
- 4-2-9. 거래실행부문은 거래실행과 관련된 내부절차를 문서화하고 거래실행 전에 해당 거래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4-2-10. <4-2-9>과 관련한 내부절차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거래정보의 입력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절차
  - 나. 거래승인권한
  - 다. 거래의 수정·취소절차
  - 라. 영업시간외 거래 또는 통상과는 다른 거래 등에 대한 절차

2)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중개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중개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자



### 3. 사후관리부문

- 4-3-1. 사후관리부문은 사후관리시스템, 업무처리절차, 인력운영, confirmation 수행(confirmation 수취 및 상호서명 등) 관련 방안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sup>3)</sup>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4-3-2. 사후관리부문은 거래실행부문에서 실행한 거래가 관계법규 등에 따라 불법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경영진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3-3. 운영리스크와 관련하여 지급결제오류 발생건수, 거래종류 및 손실금액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 同 내용을 통보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4-3-4.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 계약체결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계약체결 순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일괄입력<sup>4)</sup>함으로써 자료입력 실수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4-3-5. <4-3-4>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처리업무 단위별로 계약순서에 따라 입력할 수 있다.(B)
- 4-3-6. 사후관리부문은 파생상품거래내역과 파생상품계약내용의 일치여부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confirmation)하여야 하며, 거래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4-3-7.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관리자 및 딜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관련 분쟁은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3)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능력, 인력 및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한 후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거래실행부문이 입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력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 4-3-8.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징수하는 경우 담보가치와 거래 평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4-3-9. 금융회사는 거래실행부문의 거래내역과 사후관리부문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비교하여 거래내용이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3-10. 금융회사는 자금의 지급과 수취내역에 대한 대사(reconciliation)시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여야 한다.

#### 4. 리스크관리부문

- 4-4-1. 파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리스크관리부문은 금융회사의 전체 리스크에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리스크관리부문의 책임 및 역할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4-4-2. 리스크관리부문은 금융회사의 이사회(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4-4-3. 리스크관리부문은 <4-4-2>에서 구축된 체계에 따라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고 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 4-4-4. 리스크관리부문은 <4-4-3>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도초과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4-5. 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파생상품 리스크 관리>를,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7]가치평가 방법>을 참조한다.

## 5. 내부감사

4-5-1.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내부감사 범위에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5-2. 파생상품 규모가 큰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전문 내부감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4-5-3.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내부감사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파생상품관련 정책·절차의 적정성 및 한도준수

나.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다. 파생상품 리스크 측정 등의 적정성

라. 직무분리 및 보고라인의 적절성

마. 기타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 6. 전산시스템

4-6-1.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문 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4-6-2.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및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평가모형 등을 포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6-3. 리스크관리시스템은 가치평가, 리스크의 측정 및 한도관리 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리스크 요인별로 보유포지션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4-6-4. 파생상품거래의 처리, 확인, 기록이 포괄적으로 가능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4-6-5. 전산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은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복잡성,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영계획수립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4-6-6.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접근권한 등 담당인력의 책임 및 권한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 4-6-7. <4-6-1>~<4-6-6>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 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적인 처리, 결제 및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B)
- 4-6-8.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경우 모형 및 데이터에 관한 기준을 문서화하고 사용된 모형 및 데이터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A)
- 4-6-9.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투명성, 일관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업무매뉴얼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A)
- 4-6-10. <11-2-2> 및 <11-2-4> 등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 및 자기자본 등을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
- 4-6-11. 상계를 이용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 상계계약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A)
- 4-6-12. 가치평가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7]가치평가 방법>을 참조한다.

## [5]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 1. 절차 및 방법

- 5-1-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관리체계에 통합<sup>5)</sup>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경영진 등에 리스크정보 보고 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정보를 전체 리스크관리 보고체계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 5-1-2. 파생상품을 투자대안 또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sup>6)</sup>의 리스크 측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B)
- 5-1-3. 금융회사는 영업전략 및 시장상황의 변화가 파생상품관련 내부 규정 및 관리절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sup>7)</sup> 검토하여야 한다.
- 5-1-4. <5-1-3>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검토할 수 있다.(B)
- 5-1-5.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 시 규모, 유형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전결권자(소관위원회 승인) 및 부서합의 등 승인권한<sup>8)</sup>을 명시하여야 한다.
- 5-1-6. 국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외 자회사의 파생상품거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보고하는 실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파생상품관련 시장, 신용, 유동성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에 대하여도 전체 운영리스크관리체계에 파생상품관련 운영리스크를 포함하여야 함

6)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효과(80~125%)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현물자산의 대안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포지션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7) 리스크 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포함

8) 이는 거래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거래승인 후에도 거래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 5-1-7.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된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 5-1-8.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측정 시 사용된 각종 가정 및 모형 등에 대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5-1-9. <5-1-8>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거래규모가 작은 금융회사의 경우 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적인 처리, 결제 및 통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만을 갖추으로써 파생상품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B)
- 5-1-10. 정확한 리스크 산출을 위해 사후관리부문의 데이터와의 확인 등을 통한 산출대상 포지션의 정합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리스크 산출에 사용되는 정보의 누락,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5-1-11. 파생상품관련 리스크 한도는 전체 리스크 한도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관리되어야 한다.
- 5-1-12. <5-1-11>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설정기준, 설정절차, 검증절차, 변경절차, 결제승인권한 등 한도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5-1-13. 리스크한도는 가능한 영업단위별, 상품별, 달러별, 거래상대방별 등으로 세분<sup>9)</sup>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5-1-14. 리스크 한도는 파생상품에 내재된 위험액<sup>10)</sup>을 기준으로 거래실행 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리스크 한도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5-1-18>~<5-1-36>를 참조한다.

9) 한도설정기준은 금융회사의 실정 및 거래상품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0) 위험액이란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기초자산의 변동,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함. 잠재적인 손실액을 산정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 5-1-15. <5-1-14>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크지 않거나 리스크가 제한적인 상품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액이 아닌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B)
- 5-1-16. 명목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확한 리스크측정치를 사용하는 경우 리스크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5-1-17.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일반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하여 내재파생상품의 위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크가 제한적이어서 분해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산정 시 제외<sup>11)</sup>하는 것도 가능하다.

#### (시장리스크의 관리)

- 5-1-18.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시장리스크<sup>12)</sup> 한도는 트레이딩 부문의 한도에 포함하여 설정<sup>13)</sup>하여야 한다.
- 5-1-19. <5-1-18>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및 트레이딩 포지션 규모가 작거나 거래상품이 제한적인 금융회사의 경우 별도의 시장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체 리스크 한도에 시장리스크를 포함하거나 손실한도 또는 거래한도 설정 등을 통해 시장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B)
- 5-1-20. 시장리스크 한도 설정<sup>14)</sup> 및 측정은 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되 VaR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 VaR기법의 단점을 보완<sup>15)</sup>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법규상 파생상품 취급한도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한도산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내부관리목적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선택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가능

12) <참고1. 표준방법에 의한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및 <참고2.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참조

13) 시장리스크한도는 신용리스크 등 다른 리스크한도와는 별도로 설정하여야 함

14) 시장리스크 측정결과는 적절한 검증체계(back test 등)를 통해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15) 파생상품 종류에 따라 PVBP(Present Value of Basis Point), 듀레이션 등을 활용함

5-1-21. 옵션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옵션 민감도(Greeks) 및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한도와 같이 옵션의 비선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한도를 설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22. 시장리스크 측정 및 한도관리는 다음 분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6)</sup>.

가. (A) : 일별

나. (B) : 월별 이내

5-1-23. <5-1-22>와 관련하여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보유 포지션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 주기 및 한도관리 주기를 단축하여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5-1-24. <5-1-22> 및 <5-1-23>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일중 거래량이 많은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이월 한도 외에 별도로 일중 한도를 설정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관리<sup>17)</sup>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25.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여 트레이딩 계정 전체에 대하여 손실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5-1-26. 리스크 측정이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비정형 파생상품의 경우 리스크 측정 시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사용된 방법과 가정 등에 대해 주기적인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정방법 변경 시 그 사유와 변경방법에 대한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하여야 한다.

16) 해외소재 자회사의 시장리스크를 포함한 금융회사 전체의 시장리스크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17) 일중한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마감 이후라도 초과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동성리스크의 관리)

5-1-27. 금융회사 전체의 자금수급계획 및 유동성비율 등 유동성 지표 산출시 옵션행사, 스왑결제 등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현금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업무부서와 자금조달 업무부서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원화 및 외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권역별 규정에 따른다.

5-1-28. 현금흐름이 확정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 미확정<sup>18)</sup>된 파생상품거래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 (신용리스크의 관리)

5-1-29.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전체 신용평가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1-30. 신용리스크의 측정은 내부평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용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5-1-31.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 평가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가치평가방법>을 참조한다.

5-1-32. 금융회사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고객별로 결제전 리스크 (pre-settlement risk)를 다음의 주기로 측정하되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A) : 일별

나. (B) : 월별 이내

18) 조기종결옵션, 스왑거래의 변동금리 현금흐름 등의 경우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5-1-33. 파생상품의 포지션 대체비용 및 부가요소는 파생상품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계여부<sup>19)</sup>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신용위험 측정 시 상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5-1-34.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신용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리스크가 적절하게 이전<sup>20)</sup>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리스크를 이전받는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1-35.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결제리스크(settlement risk)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1-36. 백투백거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시장리스크를 헤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백투백거래가 많은 금융회사는 동일 거래상대방에 신용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리스크의 관리)**

- 5-1-37. 금융회사는 운영리스크<sup>21)</sup>에 대하여 별개 리스크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5-1-38.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시장 및 신용리스크 관리부문과 독립된 기능(function)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단위사업부문, 경영진 및 이사회 등 금융회사 각 단계별로 운영리스크를 적극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5-1-39. 파생상품에 대한 운영리스크 관리는 금융회사 전체의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하되, 새로운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되고 정보가 비교적 소수에게 집중되는 파생상품의 운영리스크는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참고3.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상계의 인정범위> 및 <참고4. 파생상품의 결제전 리스크 측정> 참조

20) <참고5.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인정기준> 참조

21) Basel II에서는 운영리스크를 협의로 정의하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로 정의하고 법률리스크(Legal risk)는 포함하며, 전략리스크(Strategic risk)와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는 제외하고 있음

- 5-1-40. 파생상품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는 내·외부의 운영리스크 요인 파악, 과거 손실사건<sup>22)</sup>에 대한 분석, 시나리오 분석 및 리스크통제자가 진단(RCSA, Risk Control Self Assessment) 등을 통하여 인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5-1-41. 거래형태 및 절차가 기존과 상이하거나 평가모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신규 파생상품의 경우, 운영리스크의 인식 및 관리체계 승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5-1-42. 파생상품 거래관련 손실사건 등을 포함한 운영리스크 현황,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사항<sup>23)</sup>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sup>24)</sup>하고, 이를 이사회와 경영진 및 단위사업부문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경영진은 보고서의 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1-43.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운영리스크를 통제 및 경감시키기 위한 내부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무분리(segregation of duties)를 통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다양한 내부통제 수단<sup>25)</sup>을 갖고 있어야 한다.
- 5-1-44. 파생상품 관련 심각한 업무상의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파생상품거래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에 부합하는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복구 및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1-45. 파생상품 운영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주기는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규모, 대내외 손실사건 발생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참고6. 운영리스크에 의한 손실사건 유형> 참조

23) 운영리스크 익스포저와 손실사건 및 외부시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재무, 운영 및 법규 준수 데이터 등

24) 핵심리스크지표(KRI, Key Risk Indicator)를 선정, 선정된 리스크 특성 변화의 계량화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음

25) 파생상품 업무 우수인력 확보, 합리적 기대를 크게 벗어난 이익을 시현한 상품에 대한 주의, 거래 및 계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

## 2.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5-2-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을 포함한 위기상황 분석 실시를 규정<sup>26)</sup>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A) : 월별 이내

나. (B) : 분기별 이내

5-2-2. <5-2-1>과 관련하여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실시주기를 단축하여 시장상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5-2-3. 非 정상적인 시장상황 하에서의 시장변수의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sup>27)</sup>, 위기상황 분석 시 시장변수 외에 신용변수도 감안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

5-2-4. 위기상황 분석결과는 非 정상적인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금융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한도 설정 및 리스크관리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5-2-5. 위기상황 분석의 시나리오별 예상손익 측정 시 채권, 옵션 등 가치변동이 비선형인 거래가 많은 금융회사는 정확한 손익추정을 위해서 완전가치 평가(full valuation)방법<sup>28)</sup>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

5-2-6. 금융회사는 위기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6) 내부위험관리규정 등에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책 수립기준,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명시하고 있어야 함

27) 금리 급상승은 부채과다 기업의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

28) 완전가치 평가는 가치변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감안한 평가를 의미함. 채권이나 옵션 등 가치변동이 비선형인 상품의 경우 모든 가격변동요소가 반영되어 완전 재평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채권의 경우 듀레이션과 컨벡시티를, 옵션의 경우 델타, 감마, 베가 등을 반영할 수 있다면 완전가치 평가로 볼 수 있음. 단, 로우, 세타 등이 보유포지션의 가치변화의 중요변수일 경우에는 同 요소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6] 파생상품거래위험대비 적정자기자본의 보유

- 6-1-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위험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기자본<sup>29)</sup>을 보유하여야 한다.
- 6-1-2. 파생상품거래위험에 대한 자기자본은 시장리스크 자기자본과 신용리스크 자기자본 등<sup>30)</sup>으로 구분하며 적정한 자기자본의 규모는 해당 권역의 자기자본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 6-1-3. 경제적 자본 배분 시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 6-1-4. 복합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자기자본은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으로 구분하며 복합상품 및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분리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 및 주계약의 포지션을 분해하여 주계약에 대한 시장리스크 자기자본과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및 신용리스크 자기자본을 산출
- 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분리회계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복합상품 전체에 대해 시장리스크 자기자본을 산출
-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중 분리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 주계약에 대한 신용리스크 자기자본과 분리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및 신용리스크 자기자본을 산출<sup>31)</sup>
-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중 분리회계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복합상품 전체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산출하지 않으며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9) 현행 법규에서 파생상품거래위험에 대한 자기자본의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금융권역의 경우에도 자본 배분시 파생상품리스크에 대한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30) 운영리스크 등 다른 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도 포함될 수 있음

31) 분리후 주계약(일반금융상품)은 시장리스크 자기자본산출 대상이 아니며 신용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만을 부과



## [7] 가치평가방법

### (일반)

- 7-1-1. 금융회사는 평가절차에 관한 문서화된 규정 및 매뉴얼을 보유하여야 한다. 同 매뉴얼에는 평가와 관련된 부서들의 명확한 책임관계, 시장 정보의 출처 및 정확성에 대한 검증, 평가의 독립성 확보 방법, 평가 조정 절차 및 방법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1-2. 파생상품은 거래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일기준으로 공정가치(fair value)를 산출하여야 한다.
- 7-1-3. <7-1-2>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보유 규모가 크지 않거나 제한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월말에는 평가가 이루어져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경우 가치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현 시장을 반영한 정확한 평가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B)
- 7-1-4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은 파생상품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에 제시된 방법에 따르며 평가에 사용된 가정 및 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방법 변경 시 그 사유와 변경방법에 대한 적합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 7-1-5.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입력 정보의 관리는 거래실행 부문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료입력에 대한 정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7-1-6. 금융회사는 가치평가 산출 대상이 되는 포지션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또는 사후관리부문 데이터와의 검증 등 대상 포지션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7-1-7. 신상품, 비정형 파생상품 등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상품의 경우 평가 모형에 내재된 모형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법론)

7-1-8. 시장가격의 중간값(매입-매도의 중간값)으로 포지션을 청산할 수 없다면 매입-매도가격 중 보수적인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포지션 청산이 필요 없는 상쇄 포지션의 경우 중간값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7-1-9. 유동성이 낮은 포지션, 편중된 포지션, 장기 미거래 포지션 등에 대해서는 헤지에 필요한 시간, 매입-매도 스프레드의 평균 변동성, 시장 가격의 이용가능성, 거래량의 평균과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조정 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7-1-10.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상당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건별로 신용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거나, 결산시점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기 평가된 평가가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7-1-11. 평가모형에 의한 평가(marking to model)<sup>32)</sup>시에는 정기적인 모형 검토를 통해 모형으로 추정된 가격이 시장상황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모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스템)

7-1-12.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정확한 파생상품 가치평가를 위한 시스템<sup>33)</sup>과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가치평가시스템은 회사 내의 다른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32) <참고8. 평가모형에 의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확보 방법> 참조

33) 모든 파생상품을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효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포지션 규모가 작거나 새로운 유형의 파생상품 평가를 위한 전산개발·외부패키지의 도입 여부는 향후 거래전망, 목표수익, 리스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특히,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주로 하거나 거래가 많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우(B)에 한함) 수작업 또는 spread sheet등을 이용하여 손익평가 및 리스크 규모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임

- 7-1-13.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시스템은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정확성과 안정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인준 후 사용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 7-1-14. <7-1-12> 및 <7-1-13>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아 자체 평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제 3자에 의한 평가값을 이용할 수도 있다.(B)
- 7-1-15. 제 3자에 의한 평가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독립된 전문 평가기관으로 부터 입수한 평가금액 중 보수적인 가격 또는 평균값을 사용하며 금융회사는 평가에 사용된 방법론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同 평가값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가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8] 업무취급시 유의사항

### 1. 가격의 적정성

- 8-1-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8-1-2. 모든 파생상품의 가격적정성 검증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8-1-3. 적정성 점검 기준은 거래 가격과 시장 가격(환율, 금리, 주가, 상품가격, 변동성 등)과의 비교 및 최초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등 비시장가격 거래를 실질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8-1-4. 적정성 점검은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문에서 일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최소한 익 영업일 오전까지 직전 영업일의 거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 8-1-5. <8-1-4>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보유 규모가 크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월별주기로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B)
- 8-1-6. <8-1-2>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금융회사 자체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비정형 파생상품의 경우는 독립된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 다만 <8-1-1>의 점검기준에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 8-1-7 <8-1-2>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작고, 시장거래 점검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경우, <8-1-6>에 해당하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독립된 전문평가기관<sup>34)</sup>으로부터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다.(B)

34) 독립된 제3의 선진은행의 indicative 가격도 사용가능(이는 8-1-7에만 적용되는 사항임)

8-1-8. 非시장가격 거래에 대해서는 非시장가격으로 거래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의 입증을 통해서 소명되어야 하며, 소명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진에 보고·조치하여야 한다.

## 2. 거래의 적정성

8-2-1. 금융회사 및 관련직원은 관련 법규상의 영업행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건전 거래<sup>35)</sup>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 손익의 은폐 또는 조작 등의 목적으로 시장가격과 다른 조정가격에 의해 외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나. 기존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신규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다. 손익 은폐 또는 조작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이나 외환 포지션 또는 스왑포지션 등을 고객계정이나 가명계좌 또는 신탁 계정 등에 은닉하는 행위

라. 고의적으로 상기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등

8-2-2. 업무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부당한 편익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8-2-3.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담당 직원들의 사적 거래를 제한하거나 신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거래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8-2-4.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분리, 임직원 겸직제한, 정보교류 제한 등의 방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8-2-5. 장외파생상품 개발 및 거래 시 해당 거래가 금융회사의 평판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5) 관계당국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3. 담보관리의 적정성

- 8-3-1. 금융회사는 담보의 지급 및 수취에 관한 내부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8-3-2.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담보의 지급 및 수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 가. 거래상대방이 해당 계약서에 따라 담보 지급 및 수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거래가액 및 담보가치의 평가자, 평가방법 등에 관한사항과 담보거래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정 방법 및 절차
  - 다. 담보 지급 및 수취의 대상이 되는 적격담보물을 정함에 있어 환율 등 시장위험에 따른 추가 담보 제공 가능성 및 유동성 위험
  - 라. 신용등급의 변경 등을 사유로 담보물의 표시통화가 특정 통화로 제한되거나 기 제공된 담보를 대체하는 조건(Trigger)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유동성 위험
  - 마. 담보의 지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8-3-3. <8-3-2>와 관련하여 적격담보물의 표시통화를 둘 이상으로 정하는 등 담보의 지급 및 수취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유동성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한다.
- 8-3-4. 담보의 지급 및 수취와 관련한 업무는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담보의 지급 및 수취의 결정과 집행업무는 상호 분리되어 건전한 견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3-5. 담보거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사항은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3-6. 담보의 지급 및 수취와 관련된 적정성 검토는 거래포지션 평가 등 사후관리업무 전반과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기본약정서 등에서 정한 사항이 거래상대방과의 사전 합의 없이 임의로 수정되어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 8-3-7. 담보거래에 관한 파생상품 및 담보의 가치평가 방법, 절차는 파생상품 계약서에 따르며, 이것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약정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8-3-8. <8-3-7>와 관련하여 해당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금융회사는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3-9. 담보 내역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 대사(Reconciliation)에 포함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거래내역의 대사를 통하여 상호 정보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실제내역을 확인하는데 그쳐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경우 법률문서를 보강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법적 적정성

- 8-4-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同 계약서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8-4-2.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계약 체결 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 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가 제정한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sup>36)</sup>,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를 이용
- 나. 법적 집행력이 확실한 국가에 근거를 둔 거래상대방과 거래

36) 기관들간의 단기거래의 경우 long-form confirmation을 이용할 수도 있음

- 8-4-3. 표준화된 계약서가 아닐 경우 법률자문인의 검토가 필요하며 표준화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되는 非표준적인 조항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자문인<sup>37)</sup>이 검토하여야 한다.
- 8-4-4. 법률자문인<sup>38)</sup>은 신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전에 관련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sup>39)</sup> 거래실행부문 및 사후관리부문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8-4-5. 법률자문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담당직원이 <8-4-3> 및 <8-4-4>에서 명시한 법률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8-4-6.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sup>40)</sup>토록 하는 지침 또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sup>41)</sup>.
  - 가.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sup>42)</sup>
  - 나. 거래상대방의 적법성
  - 다.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감독상의 승인 여부
  - 라.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법적 권한에 대한 유효성
- 8-4-7.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준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7) 법률자문인은 외부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회사의 영업형태, 재무여건에 따라 내부에서도 선임 가능

38) 법률자문인은 해당거래의 경제적 본질, 거래상대방 거주지역의 관할법규 그리고 상품이 거래되어지는 시장을 관찰하는 법률 등과 관련하여 법적 적정성을 고려하여야 함

39) 신규 파생상품거래일지라도 과거 동 금융회사가 행하였던 거래와 구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울러 내부위원회 등에서 법률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경우 법률자문인의 검토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임

40) 서명감(또는 인감) 교환 등에 의하여 거래담당자의 권한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41)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미취득 금융회사는 당해 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적법성, 계약서 조항들의 법적 실행가능성, 계약체결자의 권한 확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의견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42) 해지, 계약 해지시 결제금액 산정, 증거금·보증금이나 담보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



- 8-4-8. 금융회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기본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적법성 및 거래담당자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거래확인서, 상품설명서, 제안서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 8-4-9.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와 장외파생상품관련 백투백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호 거래계약서의 주요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sup>43)</sup>.
- 8-4-10.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관련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계계약, 담보 취득, 보증, 신용파생상품 등 신용보강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유효성<sup>44)</sup>을 확인하여야 한다.

## 5. 새로운 상품취급

- 8-5-1. 금융회사는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 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는 관련 부서의 협의 및 경영진의 승인(또는 내부심의회구의 승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시장특성 등을 고려한 취급 상품의 상품성
- 나. 영업전략과의 부합 여부
- 다. 가치평가방법 및 헤지방안
- 라.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 및 이익대비 리스크의 적정성
- 마. 회계, 세무 및 법적 유효성
- 바. 대고객 영업 시 유의사항
- 사. 보고서작성 등 사후관리방안

- 8-5-2. <8-5-1>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새로운 파생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sup>45)</sup>.

43) 상호 거래계약서의 주요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일치되지 않은 경우 법률자문인 또는 법률담당직원은 이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거래실행부문과 리스크관리부문에 통보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44) 거래상대방 국가에서의 법적 유효성 포함

45) 비정형 파생상품 및 거액거래 등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상품도 포함

## [9] 영업시 유의사항

- 9-1-1. 금융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업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9-1-2.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충분한 투자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등 필요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가.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할 것
  - 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 투자자에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을 것
  - 다.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 라.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의 의사에 반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하지 말 것
  - 마. 투자자로부터 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하며, 매매거래의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지 아니할 것
  - 바. 일반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 투자권유는 적격 투자권유자문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것

- 9-1-3. <9-1-2>의 투자권유준칙은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별로 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는 경우 표준투자권유준칙보다 엄격한 투자자보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9-1-4.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거나 낮출 수 없는 경우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9-1-5.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담당하는 직원이 투자권유 대상인 파생상품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투자권유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9-1-6. 금융회사는 대고객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야 한다<sup>46)</sup>.
- 9-1-7.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외환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기업투자자<sup>47)</sup> 포함)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 위험회피대상의 변동에 대한 대응 또는 손실단절을 위한 중도해지 내지 반대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9-1-8.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외환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기업투자자 포함)에게 장외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거래평가서를 매월 1회 이상 송부하여야 한다.

46) 고객과의 분쟁내용은 주기적으로 경영진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되어야 함

47) '기업투자자'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2>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를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 내지 제17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

## [10] 파생상품 거래의 보고 및 공시

### 1.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10-1-1. 금융회사는 월·분기·반기·결산기별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등에 파생상품 거래현황, 잔액현황, 손익현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내용 및 작성요령은 자본시장법 및 각 금융권역별 관련 법규정 등에 따른다.

10-1-2. 금융회사는 <10-1-1>에 의한 업무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파생상품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무분리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부문의 부서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0-1-3.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재무정보의 공시

10-2-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내역을 그 거래목적에 따라 재무제표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참조한다.

### 3. 수시공시

10-3-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거액손실 또는 이익<sup>48)</sup>이 발생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각 금융권역별 관련 법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48) 손익에는 평가손익이 포함되며, 헤지거래의 경우 관련 기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

10-3-2. <10-3-1>를 적용 시 손익의 산출 방법은 금융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별로 관리하는 회사는 개별 계약의 손익금액을 기준으로, 펀드 또는 북(Book)의 형태로 관리하는 회사는 당해 펀드 또는 북의 총 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 [11] 전문성의 유지 및 성과평가

### 1. 전문성의 유지

11-1-1. 금융회사는 파생상품을 포함한 트레이딩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 능력과 리스크관리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거래실행부문, 리스크 관리부문 및 사후관리부문 담당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1-1-2. <11-1-1>과 관련하여 전문성의 판단 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파생상품업무 경력, 전문자격증, 관련분야 전공여부, 연수이수사항, 어학능력 등 객관적인 전문성

나. 당해 회사 또는 감독기관 등에서 받은 징계에 관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준법성

다. 파생상품과 관련된 가격결정모형, 사용변수 및 한계점에 대한 이해정도

라. 시장상황 및 리스크요인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거래전략 및 포트폴리오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실무능력

11-1-3.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 및 리스크 관리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담당직원(front, middle, back office 및 관련부서)에게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1-1-4. 금융회사는 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부문 관련직원의 인사이동이나 대량이직 등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실패, 업무처리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1-1-5. 중요직원의 결원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2. 성과평가

- 11-2-1. 금융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전문직원의 채용 및 기존인력의 이직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1-2-2. 파생상품거래는 단기간에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자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취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동기를 감축시킬 수 있도록 리스크가 반영된 보상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11-2-3. 관리부문과 수익창출부문에 대한 명확한 구분기준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리스크 관리부문에 대한 보상체계는 거래부문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 11-2-4. 금융회사는 리스크가 반영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하여 리스크조정 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갖추고 관련 위험과 이익을 그 원천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
- 11-2-5.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성과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합리적인 성과측정 및 성과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1-2-6. 금융회사는 경쟁회사의 파생상품관련 전문직원을 동시에 대규모로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

## [12]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

12-1-1. 모든 파생상품은 거래목적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계약별 평가금액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총액<sup>49)</sup>으로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손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12-1-2. 복합상품의 경우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12-1-3.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지만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와 주계약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차이를 내재파생상품 공정가치로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12-1-4.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한다.

가.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나.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12-1-5. 복합상품의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기초변수가 이자율관련 변수로 동일할지라도 복합상품의 취득시점에서 다음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리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49) 이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실현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그 실현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이를 상계하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총위험이 과소표시되기 때문



- 가. 복합상품이 보유자가 인식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방법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
  - 나.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복합상품의 수익률이 주계약의 최초 수익률의 최소 두 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주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계약의 시장수익률의 최소한 두 배가 될 수 있는 경우
- 12-1-6. 일반적으로 여러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계약의 경우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회계처리한다.
- 12-1-7. ‘up-front cash payment’나 ‘off-market terms’ 조건이 포함된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거래상대방, 시장상황과의 비교, 거래목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성격을 파악한 후 자금대여(차입) 거래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 12-1-9.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이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sup>50)</sup>.
- 12-1-10. 위험회피효과 평가는 최소한 결산기(분기결산 포함)마다 하여야 하며, 각 위험회피기간별로 측정하거나 위험회피누적기간동안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위험회피 전체 기간 및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12-1-11. 위험회피수단은 원칙적으로 파생상품만 가능하다. 다만,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자산 및 비파생금융부채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2-1-12. 파생상품의 비례적 부분(예: 계약단위 수량의 50%)을 위험회피 관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위험회피수단의 잔여만기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없다.

50) 다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12-1-13. 공정가치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모두 해당 연도의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특정위험에 대한 공정가치변동만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12-1-14. 현금흐름 위험회피 수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한다.

12-1-15. 위험회피회계 중단요건<sup>51)</sup>에 해당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한다<sup>52)</sup>.

12-1-16.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이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외환환산손익 등의 경우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상계되므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불필요하다.

12-1-17. 베이스스 스왑을 이용하여 특정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을 다른 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으로 변경하는 위험회피활동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스스 스왑의 변동금리지표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금리지표와 각각 동일해야 한다.

나.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스스 스왑이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상계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51) <참고13. 위험회피회계 적용 및 중단 요건> 참조

52) 다만,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 12-1-18. 매도옵션을 이용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을 매도옵션과 결합시킨 합성상품의 잠재적 평가이익이 잠재적 평가손실과 같거나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일 경우는 同 합성상품의 유리한 잠재적 현금흐름 변동이 불리한 현금흐름 변동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 12-1-19.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외화리스크를 부담하게 된 연결당사 회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와 그 부담한 리스크를 상계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결회사간의 파생상품거래 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 [13] 기타

이 모범규준의 개정사항은 '2011.8.1.부터 적용한다. 금융회사는 이 모범규준 중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에 관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이 확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참고자료



## 〈참고1〉 표준방법에 의한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 1. 금리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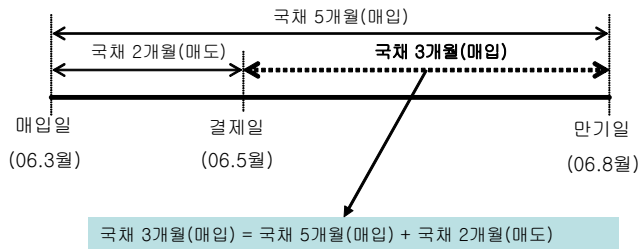
금리 관련 파생상품은 당해 기초상품의 적정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일반 시장 리스크를 계산하고, 대상포지션 금액은 시장가치로 한다.

\* 선물(futures), 통화 및 금리선도거래, 스왑거래는 국채 포지션으로 분리

#### □ 금리선물

결제일이 2006.5월인 3개월물 금리선물을 2006.3월에 매입한 경우

⇒ + {잔존 만기 5개월 무이표채 국채매입  
잔존 만기 2개월 무이표채 국채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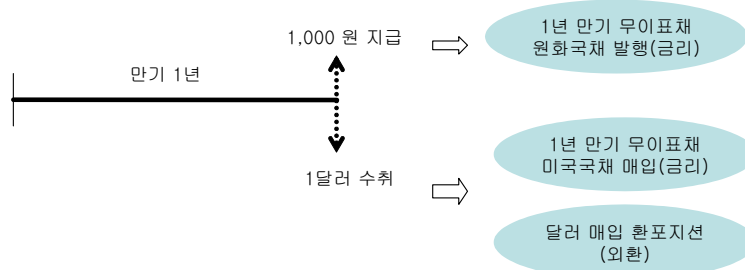


#### □ 통화 선도거래

만기 1년, 원금 1달러를 1,000원에 매입한 경우

⇒ + {1,000원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만기 1년 무이표채 원화국채 매도  
1달러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만기 1년 무이표채 달러국채 매입

[외환 포지션 1달러\*현물환율(또는 동 금액의 현가금액)은 달러 매입 환 포지션으로 별도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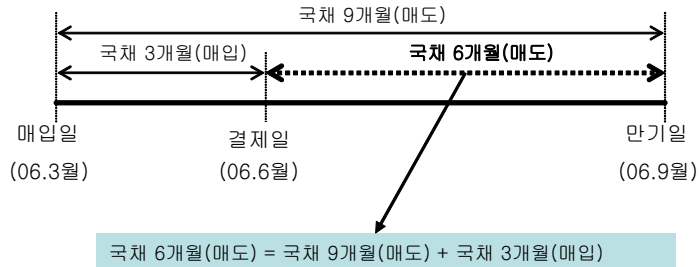




### □ 선도금리 거래(FRA)

2006.3월에 3 X 9(3개월 후에 시작하여 6개월 후에 종료) FRA를 매입한 경우(약정 고정금리 차입거래로 채권발행(매도)과 동일)

⇒ + {잔존 만기 9개월 무이표채 국채매도  
잔존 만기 3개월 무이표채 국채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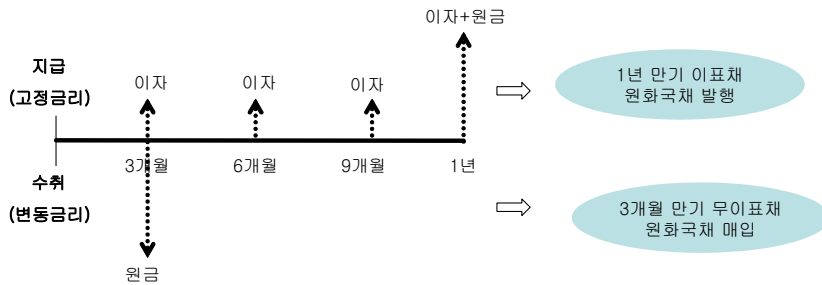


### □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1년간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3개월 CD 금리연동) 수취 거래의 경우

⇒ + {3개월 만기 무이표채 원화국채 매입\*  
1년 만기 이표채 원화국채매도

\* 변동금리 부분은 차기 금리 변동일을 만기로 한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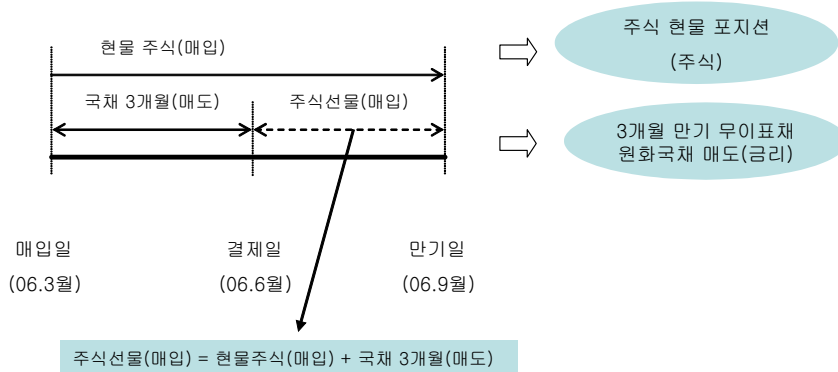
## 2. 주식 포지션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당해 기초자산인 현물주식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산출  
(주식포지션에 부수되는 금리리스크는 별도 산출)

### □ 주가지수 선물

2006.3월 KOSPI200 6월물 선물을 105에 1계약 매입(당일 현물 증가 100)

⇒ 5천만원(=100x50만원x1계약) 현물주식 매입 포지션(KOSPI)  
(현물 주식매입 포지션에 따른 자금부문인 원금 5천만원 3개월 만기  
무이표 국채매도는 금리포지션으로 별도 계산)



## 3. 외환 포지션

원화를 제외한 외화에 대해 명목가액(또는 현가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통화  
별로 산출(선도거래에 내재된 금리리스크는 별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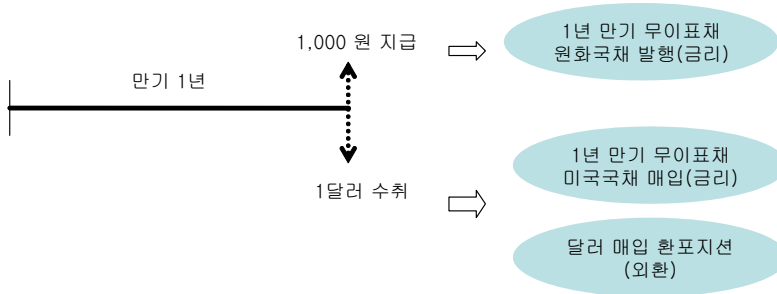
### □ 원달러 선도거래

만기 1년, 원금 1달러를 1,000원에 매입한 경우

⇒ 1달러\*현물환율(또는 동 금액의 현가금액) 달러 매입 환 포지션



[1,000원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1년 만기 원화 무이표채 국채 발행(매도) + 1달러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1년 만기 무이표채 미국 달러국채 매입은 금리포지션으로 별도 관리, 통화선도 금리리스크 산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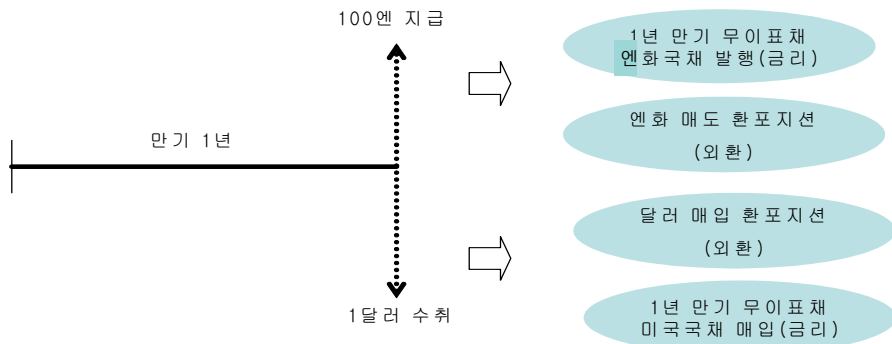


□ 외화 간 선도거래

만기 1년, 원금 1달러를 100엔에 매입한 경우

⇒ + { 1달러\*원달러 현물환율(또는 현재가치) 달러 매입 환포지션  
 { 100엔\*원엔 현물환율(또는 현재가치) 엔화 매도 환포지션

[1달러\*원달러 현물환율(또는 현재가치) 1년 만기 무이표채 달러 국채 매입 +100엔\*원엔 현물환율(현재가치) 1년 만기 무이표채 엔화 국채 매도는 금리포지션으로 별도 관리, 통화선도 금리리스크 산출 참조]



## 〈참고2〉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 산출 방법

### 1. 시장리스크 구성

일반 시장리스크(general market risk)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 부터의 손실

개별 리스크(specific risk)

시장금리 변동과는 구분하여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 발행자의 개별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으로 부터의 손실

### 2. 시장리스크 측정 방법

표준방법

BIS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리스크 측정방법으로 금리, 외환, 주식, 상품, 옵션 등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 대하여 자기자본 산출 후 리스크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building block)

○ 금리리스크 측정 방법

- 일반 시장리스크

구 분	측정 방법	비 고
만기법	시가로 평가된 채권 및 기초자산의 시가로 분해된 금리 파생상품의 만기를 해당하는 만기표(13개 기간별)에 배분하여 산출	
듀레이션 법	만기법과 유사하나, 단순 만기 대신 수정 듀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출한 만기를 해당 만기표에 배분	감독 원장 사전 승인
사전처리기법	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이자도 포함)의 현재가치 또는 민감도(BPV)를 해당 기간대에 배분	감독 원장 사전 승인

- 개별리스크

기초자산이 국채로 분해되는 금리 및 통화스왑, 선도금리계약, 통화선도 거래 등은 개별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초자산이 국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일 경우 채권등급별 및 잔존만기별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주식리스크 측정 방법**

- 일반 시장리스크

현물주식 포지션(파생상품의 경우 기초 현물주식 포지션으로 분해 후)을 매입주식 포지션( $L_s$ )과 매도주식포지션( $S_s$ )으로 나누어 그 차액의 절대값에 대해 산출  $\Rightarrow |L_s - S_s| \times$  주식위험상당치

- 개별리스크

보유한 총 주식포지션(주식포지션일 경우) 또는 순 포지션(주식관련 파생상품일 경우)에 대해 유동성 기준과 분산도 기준 충족여부를 고려하여 산출

\* 주식 포지션 :

$|L_s + S_s| \times$  주식 위험상당치(유동성 및 분산도 조건 충족에 따라 차등)

\* 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지션 :

$|L_s - S_s| \times$  주식 위험상당치(유동성 및 분산도 조건 충족에 따라 차등)

○ **외환리스크 측정 방법**

- 일반 시장리스크

금융회사가 보유한 통화별 순매입포지션( $\sum NL_i$ )과 순매도포지션( $\sum NS_i$ )의 합계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산출[금 포지션( $L_g, S_g$ )은 순포지션에 대해 산출]

\* 외환 포지션 :  $Max(\sum NL_i, \sum NS_i) \times 8\%$

\* 금 포지션 :  $|L_g - S_g| \times 8\%$

- 개별리스크 : 외환포지션은 개별리스크 산출 제외

○ **상품리스크 측정 방법**

- 일반 시장리스크

구 분	측정 방법
간편법	상품군별로 매입( $L_c$ ), 매도( $S_c$ ) 포지션의 총계 및 순 포지션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Rightarrow  L_c + S_c  \times 3\% +  L_c - S_c  \times 15\%$
만기 사다리법	금리리스크의 만기법과 유사하며, 만기를 7개구간으로 구분하고 만기구간별로 상계포지션과 미상계포지션에 대해 상이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개별리스크 : 상품포지션은 개별리스크 산출 제외

○ 옵션리스크 측정 방법

구 분		측정 방법	비 고
간편법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에서 옵션 내재가치를 차감한 금액 또는,</li> <li>- 기초자산의 시장가치에 기초자산별 개별리스크 계수와 일반시장리스크 계수의 합계를 곱한 금액과 옵션의 시장가치 중 작은 금액</li> </ul>	매입옵션만 취급하는 경우에만 사용
	증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포지션 : 옵션의 시가, 단 상장옵션은 기초자산의 시가액에 기초자산의 위험상당치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으로 함</li> <li>- 매도포지션 : 기초자산의 시가액에 기초자산의 위험상당치를 곱한 금액에서 외가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상장옵션의 경우 증거금을 위험액으로 함</li> </ul>	
델타플러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델타리스크 : 옵션의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를 곱하여 델타환산액을 산출한 후, 옵션의 기초자산에 따라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등 대상자산에 포함하여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 산출</li> <li>- 감마리스크(<math>\frac{1}{2} \times \gamma \times (VU)^2</math>) : 기초자산별로 순 감마리스크를 산출하여 순 감마리스크가 음(-)인 경우에만 해 소요자기자본 산출</li> <li>- 베가리스크(베가*기초자산의 변동률*0.25) : 기초자산별로 베가리스크의 절대값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요자기자본 산출</li> </ul>	
시나리오법*		<p>옵션 및 이와 헤지된 기초자산의 포지션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의 변동구간을 양측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 최대 손실액을 소요자기자본으로 계산</p>	감독원장 사전승인

\* 변동구간은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



□ 내부모형(금융감독원장 사전승인)

- 과거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리스크요소의 시장변동성과 리스크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리스크 측정시스템에 의해 최대예상손실액인 VaR값을 산출하여 소요자기자본 산출
- 표준방법과 비교하여 내부모형은 보다 정확한 시장리스크의 측정이 가능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선진기법의 개발 유인을 제공하는 점에서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리스크 측정 및 관리가 바람직

- 일반 시장리스크

구 분	측정 방법	비 고
분산·공분산법	<p>모수적 접근법으로 시장리스크요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델타-노말법 : 1차미분값인 델타값을 통하여 포지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li> <li>- 델타-감마법 : 델타 외에 2차 미분값(예:감마)까지 반영하여 리스크 측정</li> </ul>	부분가치 평가법
역사적 시뮬레이션법	시장리스크요소의 역사적인 변동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가치변화 측정	완전가치 평가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법	확률변수를 생성하여 포트폴리오 가치변화를 측정 [확률과정의 모수(변동성과 상관관계)는 과거자료를 이용]	

※ 평가방법론

◆ 부분가치 평가법

시장리스크 대상 포지션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미분을 통해 동 포지션의 가치변화를 추정하는 방법

◆ 완전가치 평가법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

- 개별리스크(잔여리스크+부도 및 사건 리스크)

\* 잔여리스크

정규분포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통계모형인 CAPM 또는 수익률모형 등을 이용하여 계산

\* 부도 및 사건 리스크

CreditMetrics, CreditRisk, KMV 등 Credit VaR모형을 이용하여 계산

○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 계산 방법

- 하나의 모형에서 일반 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를 모두 측정할 경우

⇒ 전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측정치와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 측정치의 평균값×(3+α\*\*) 중 큰 금액

$$Max[ VaR_{t-1}, (\frac{1}{60} \sum_1^{60} VaR_{t-1}) \times (3 \times \alpha) ]$$

\* 99%의 단측신뢰구간과 10영업일 보유기간 적용

\*\* 질적 및 약정기준 충족수준과 사후검증 결과에 따라 결정

- 개별리스크를 별도로 산출할 경우

표준방법에 의한 개별리스크량 또는 surcharge(사건 및 부도리스크 측정하지 못할 경우)를 별도로 감안

○ 시장위험 가중자산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 × 12.5

□ 내부모형과 표준모형의 혼용

○ 원칙적으로 같은 리스크 범주(금리, 주식, 외환, 옵션 등)내에서의 두 방법의 혼용은 불가

단, 포지션규모가 미미하거나, 개별리스크, 기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표준방법으로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 산출량에 합산

○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는 감독원장의 별도 조치(승인철회 등)가 없는 한 표준방법으로 회귀가 불가

### 〈참고3〉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상계의 인정범위

- 양자간\* 상계계약이 있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난외자산간 채권·채무 상계를 허용

\* 단일 거래상대방 간의 양자 간 상계만 인정하고 복수의 거래상대방 간의 다자간 상계는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신용리스크가 없는 ①원만기 14일 이하의 외환관련거래(금관련 거래 제외)와 ②거래소에서 매일 시가평가하여 차액이 정산되는 파생상품과 ③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상계대상에서 제외
- 상계계약 중 更改(novation)\*에 의한 상계 또는 일괄청산에 의한 상계(close-out netting)\*\*에 대하여 상계처리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純신용환산액을 기준으로 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양 당사자사이의 동종의 자산과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거래들을 특정시점에 자동적으로 모든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새로운 채권·채무로 만드는 상계계약의 형태

\*\*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 시 양 당사자 간 상계대상에 포함된 모든 파생상품 거래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순잔액 기준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기초자산이 동일하지 않은 파생상품 거래 간 상계에 사용

- 상계인정 요건 : 상계대상 거래에 대하여 다음 요건 충족 시 상계 허용

- 상계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는 양 당사자 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취소가능조항(Walkaway clauses)\* 등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채무불이행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에 대해 제한적 보상만을 하거나 전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 후 순액으로 제한됨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를 상계계약서에 첨부·보관하여야 한다. 법률의견서는 거래관련 국가들의 소관법정 및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상계대상거래의 내용, 거래상대방의 적정성, 관련국가에서의 상계계약의 법률적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의 감독당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상 상계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同 법률의견서는 거래상대방 국가의 법률 변동 및 상계대상거래 내역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금융회사는 상계계약의 유효성 및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同 시스템 및 절차에는 상계계약이 법적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국가의 법령 및 판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내부시스템과 상계계약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시스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4〉

## 파생상품의 결제전 리스크 측정

### 1. BIS자기자본비율(은행)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사) 산출방식에 따른 신용리스크 상당액 측정방법

- 선도, 선물(futures), 스왑,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융회사가 계약상 거래액(액면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이 파산했을 경우의 cashflow를 재구축하는데 필요한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에 대하여만 신용리스크를 부담.
- 파생상품의 신용리스크 상당액(신용환산액)은 current exposure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상계인정여부에 따라 總신용환산액기준과 純신용환산액기준으로 구분. 파생상품에 대한 상계인정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함.
- 신용리스크 상당액(신용환산액) 산출시 유의사항
  - 원 계약기간이 14일 이내의 외환관련거래는 신용리스크산출 대상에서 제외
  - 시가평가에 의한 증거금이 매일 징구되고 있는 거래소거래는 결제전 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

#### 〈總신용환산액 기준〉

- 신용리스크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된 현재의 총대체비용(1)에 잔존계약기간 중의 잠재적인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상계 전 추가항목(2)을 합하여 산출

- (1) 시가로 평가된 당해 계약의 평가액  
(증권사의 경우 당해 계약의 평가액 또는 평가손)
- (2) 거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 다음의 신용환산율을 명목 원금에 곱하여 산출한 잠재적 신용위험(potential future credit exposure) 상당액\*

\* 부가요소 측정 시 통계적 수단을 이용 가능

$$\text{【總신용환산액} = \text{總대체비용} + \text{명목원금} \times \text{신용환산율} \text{】}$$

Current Exposure 방식에 의한 추가항목 신용환산율

(단위 : %)

잔존만기	금 리	외환 및 금	주 식	귀금속(금제외)	기타상품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純신용환산액 기준〉

□ 신용리스크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된 현재의 순대체비용(1)에 잔존계약기간 중의 잠재적인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상계 후 추가항목(2)을 합하여 산출

(1) 상계 후 평가익(평가손인 경우에는 '0')

(2) 상계 전 신용환산액을 감안하여 아래의 식에 의해 산출

$$\text{【純신용환산액 = 純대체비용 + 상계전 추가항목 * [0.4 + 0.6 * (純대체비용/總대체비용)]】}$$

<참고5>

##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 이전기준

- 금융기관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헤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명시성)
    -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취소불가능성)
    - 준거자산 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무조건성)
    -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同 순위 일 것
      - 기초자산과 준거자산 간에 교차부도조항\*이 있을 것
  - \* 기초자산이 부도발생한 경우 준거자산도 부도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위험 이전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
  -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 금융기관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특수목적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며, 보장매입자는 직·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 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보장매입자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 금융기관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 금융기관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위의 조건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



<참고6>

## 운영리스크 관련 손실사건 유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내부 사취	적어도 한사람이상의 내부자가 관여된 은행 재산의 횡령, 착복 또는 규정, 법률, 은행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비인가된 행위	거래의 미보고(고의) 비인가된 거래 형태(금전손실) 포지션 오류 표기(고의)
		절도 및 사기	사기/신용사기/허위예금 절도/부당취득/횡령/강도 자산 착복 고의적인 자산의 손괴 위조 수표위변조 은행자산 반출 고객계좌 부당인출/고객가장인출 등 탈세(고의) 뇌물/리베이트 기장되지 않는 내부거래
외부 사취	외부인에 의한 은행자산의 횡령, 착복 또는 법률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절도 및 사기	절도/강도 위조 수표위변조
		시스템 보안	해킹에 의한 손실 정보의 절취(금전 손실)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용,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협약 위반이나 직원의 상해 소송 또는 인종차별 사건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손실	고용관계	보수, 복지, 해고 문제 노동조합 활동
		사업장 안전	일반적 책임(미끄러짐, 넘어짐 등) 직원 건강 및 안전 기준 근로자 보상
		인종차별	모든 인종차별 형태
고객, 상품 및 영업	특정 고객에 대한 업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상품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실	적정성, 공시 및 신용	신용/규정위반 적정성 및 공시문제 소매고객 공시 위반 고객정보 보호 위반 공격적 판매 회계조작 비밀정보의 오용 신용공여자의 책무

대분류 (Level1)	정의	소분류 (Level2)	예시 (Level3)
(고객, 상품 및 영업)		부적절한 영업 및 마케팅 행위	독점금지 부적절한 거래 및 마케팅 시장 조작 기장된 내부거래 허가받지 않은 행위 자금세탁
		상품의 결함	상품 결함(허가받지 않은 상품 등) 모델 결함
		선택, 후원 및 익스포져	규제종류별 고객 조사 실패 고객 익스포져 한도 초과
		자문 활동	자문활동 수행과 관련된 분쟁
유형자산 손실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유형자산의 손실	재해 및 기타 사건	자연재해 손실 테러 등 외부사건에 의한 인적 손실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	업무 중단 및 시스템 장애에 의한 손실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통신 각종 장비의 단절 또는 부족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거래의 처리 및 그 과정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또는 거래 상대방 또는 매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거래의 포착, 실행 및 유지	의사소통의 실패 자료의 입력, 유지 실패 기한 또는 의무 미준수 모델 또는 시스템의 작동오류 회계오류/조직권한 오류 기타 업무수행 실패 전달 오류 담보관리 실패 관련자료 유지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보고의무의 실패 부적절한 외부 보고(손실발생시)
		고객확보 및 문서화	고객 수용/거부자료 분실 법적 문서의 분실/불완전
		고객 계좌 관리	승인받지 않은 계좌 접근 부정확한 고객 자료(손실 발생시) 부주의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거래 상대방	비고객 거래상대방의 미이행 비고객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매도자 및 공급자	아웃소싱 매도자와의 분쟁

1. 위기상황 분석의 필요성

-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위험관리 수단인 VaR(Value-at-Risk)시스템은 정상적인 시장상황 하에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최대예상손실을 측정·통제하는 방식이므로, 非 정상적 시장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위기상황분석' 기법이 필요.
- 경영진은 위기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분석을 통하여 향후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손실액 추정 및 자기자본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리스크 축소, 헤지방안 강구 등 적정 자기자본 유지를 위한 단계별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의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함.

2. 위기상황분석의 기간설정 및 분석 방법

- 위기상황분석의 예상기간(forecast horizon) 설정은 위기상황 발생 시 시장의 비유동성과 포지션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결정함.
- 위기상황분석 방법에 있어서 표준기법은 없으나 단순민감도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역사적, 가상 시나리오), 최대손실 접근법, 극단치 이론(extreme value theory)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단순 민감도 테스트(Simple Sensitivity Test)**  
 특정 리스크요인을 미리 정한 다양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경우,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방법임. 예를 들어 리스크요인이 주가라면, 주가의 단계적인 충격(±2%, ±4%, ±6%, ±8% 등)에 의한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시나리오 분석법(Scenario Analysis ; Historical or Hypothetical)**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극단적이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역사적 시나리오법과 가상 시나리오법이 있음.
  - **역사적 시나리오법**  
 과거 위기상황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식별한 후, 그 시기의 시장리스크 요인들의 관측된 실제 변동폭을 위기상황 시나리오로 사용함.



현재 포지션과 적합성, 시장의 비유동성, 금융상품의 선형적 내지 비선형적 특성 및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간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함.

- 가상 시나리오 분석법

역사적 시나리오와는 달리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과거의 패턴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관적(Subjective) 혹은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는 리스크요인들의 변동구조를 합리적으로 추정, 이를 기초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법임.

○ 최대손실 접근법(Maximum Loss Approach)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잠재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리스크 요인들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임.

○ 극단치이론(EVT: Extreme Value Theory)

분포에 대한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확률분포의 꼬리부분 움직임에 극단치 이론을 이용하여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시장상황을 추정함.

위기상황분석 방법론간의 장·단점

구분		내 용
단순민감도 테스트		-장점: 가장 단순하고 개발이 용이한 방법 -단점: 충격발생의 개연성이나 시나리오 설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
시나리오 분석	역사적 시나리오	-장점: 시장리스크 요인의 변화구조가 임의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가 쉽고 분석방법이 용이 -단점: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위험을 설명하는데 한계
	가상 시나리오	-장점: 어떤 사건이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위험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역사적 시나리오의 단점을 보완 가능 -단점: 시나리오 개발자의 주관적/임의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음
최대손실 접근법		-장점: 포트폴리오의 최대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찾아냄으로써 금융회사가 어떠한 리스크요인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음 -단점: 리스크요인의 설정이나 조합이 다소 임의적일 수 있고, 실행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극단치 이론		-장점: 분포에 대한 특별한 가정을 하지 않는 모수적 방법론으로서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시장상황도 다룰 수 있음 -단점: 실행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 3. 위기상황분석의 활용방법

- 분석 결과 나타난 잠재적인 최대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리스크 축소 및 자기자본 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마련 등 자본적정성 평가를 실시함.
- 위기상황시의 한도설정, 비상대책 수립(contingency plan), 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자본배분 등의 수단으로 활용함.
-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예, 위기 상황 발생 전, 요주의 상황, 준위기 상황, 위기상황 등)을 마련함.

#### 위기상황의 단계별 대응조치(예시)

단계	조치내용
위기상황 발생 전	- 정기적 위기상황 시나리오 분석, 보고 그리고 모니터링 등 사전적 리스크활동을 수행하며, 위험대비 자기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위기상황 발생 1단계	- 포착된 위기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분석 실시 및 보고를 하며, 위기 상황 징후 발생에 따른 주의 촉구 문서 시달
위기상황 발생 2단계	- 실무회의를 소집하고 위기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응전략을 협의 - 위기상황에 따른 제반사항을 경영진에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결정 - 리스크 요소의 변동상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일별 손익 변동상황을 점검하여 포트폴리오의 부분청산 또는 헤지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포트폴리오의 재조정을 시행
위기상황 발생 3단계	-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위기대책반을 운영 - 리스크관리활동을 강화하여 전체포트폴리오의 청산 또는 완전헤지를 통한 균형 포지션을 구축하는 등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 - 위기상황시 위험대비 자본금 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시행

## 〈참고8〉 평가모형에 의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확보방법

1. 경영진은 모형에 의한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영업상의 리스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평가에 사용되는 시장정보의 적절성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특정상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가능한 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4. 자체적으로 모형을 개발할 경우, 적절한 가정에 기초한 모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부서와는 별도로 독립된 적합한 자격을 갖춘 부서에 의하여 적정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모형은 거래실행부문과 독립된 부문에서 개발 또는 승인되어야 하며 테스트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테스트에는 수식 및 가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적용에 대한 검증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모형 변경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보안성이 확보된 모형의 사본을 보유하고, 정기적인 가치 평가 검증 시 同 사본을 이용하여야 한다.
6. 리스크 관리부문은 사용되고 있는 모형의 약점과 그것을 평가 결과에 가장 잘 반영시키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7. 모형의 정확성을 확보를 위해 결과값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손익대비 리스크 요인 분석, 모형 결과값과 실제 청산가치와의 비교 등)
8. 평가가치의 조정은 모형평가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참고9〉

# 장외파생상품의 담보관리절차

※ ISDA의 ‘Best Practices for the OTC Derivatives Collateral Process(2010.6.)을 기초로 하여 작성

### 용어정의

기본계약서 : ISDA Master Agreement 등

신용보강약정서 : CSA(Credit Support Annexes, NewYork Law), CSD(Credit Support Deed, English Law)

개별거래확인서 : Long Form Confirmations

표준결제지침 : Standard Settlement Instructions (SSIs)

기본계약서등 : 기본계약서를 지칭하나 기본계약서의 주요내역을 포함한 개별거래확인서를 포함한다.

적격담보물 : Eligible Collateral

증거금 : Margin

개시증거금, 변동증거금 : Initial Margin, Variation Margin

## 1. 거래상대방의 등록(Client On-boarding)과 계약서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의 관리

: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개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을 등록하고, 계약 및 담보에 관한 사항들이 내부시스템에 반영되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절차이며 적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업무절차 전반에 대하여 적절한 경영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1.1 기본계약서의 등록

: 금융회사는 기본계약서가 새로이 체결되거나 변경된 경우 즉시 해당 내역이 모든 관련 부문에서 인지되고 이에 따라 업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1.1 기본계약서의 법적 적정성은 법률자문인 등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 때 단순한 법률구문 검토 뿐만 아니라 계약에 의한 각종 법적 의무 이행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은 없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1.2 기본계약서는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문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최고 위험관리자(CR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신용보강약정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신용위험뿐 아니라 유동성·결제·운용위험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1.1.3 기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거래, 지급결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반영되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4 기본계약서는 금융회사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및 거래환경요인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반여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경영진은 변동사항이 기본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2 연락에 관한 사항의 교환(Exchange of contact)

: 신용보강약정서에는 담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연락처 정보 등 연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1.2.1 연락처 정보는 전자적 정보교환(e-mail 등)방식 및 유선전화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교환되는 정보를 관련 업무 담당인력 모두가 지체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룹메일 등)

1.2.2 담보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는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문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3 금융회사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연락에 관한 정보에는 실무담당자, 해당 인력의 상급관리자 및 신용위험관리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그룹메일에 해당 인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3 표준결제지침의 교환

: 표준결제지침의 교환은 기본계약서 등에 따른 최초 담보교환이 집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3.1 금융회사는 신용보강약정서가 정하는 모든 적격담보물에 대하여 인증된 표준결제지침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표준결제지침은 담보교환에 앞서 거래상대방과의 확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3.2 1.3.1이 정하는 표준결제지침의 제공 및 확인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3.3 금융회사는 표준결제지침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거래담당자가 아닌 후선업무부서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거래담당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3.4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이 직접 표준결제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정보 제공자(예: Prime Broker 또는 아웃소싱 조직 등)를 통하는 경우 정보 제공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1.4 비표준적인 조항

: 금융회사는 비표준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보강약정서 또는 개별거래 확인서 등에 대해서는 체결 이전에 담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문이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4.1 금융회사는 담보업무를 처리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처리절차를 배제하거나 추가적인 처리절차를 요구하는 비표준적인 조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1.5 표준계약서의 사용

: 금융회사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1 기본계약서 체결 이전, 금융회사는 기본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이 반영된 개별거래확인서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개별거래확인서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는 절차에 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 1.6 개별거래확인서에 담보 관련 사항의 기재

: 금융회사가 개별거래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보강약정서에 정의되는 표준적인 담보 관련 사항들이 개별거래확인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 1.7 적격담보물

: 금융회사는 신용보강약정서 및 개별거래확인서에 적격담보물을 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하며, 회사의 유동성위험 또는 거래상대방위험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1.7.1 적격 담보물은 높은 유동성(환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담보물을 금융회사가 직접 처분해야 하는 경우 어떠한 제약도 없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1.7.2 적격 담보물은 대한민국 법화(Legal Tender)인 원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즉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1.7.3 적격 담보물은 금융회사가 투자·보유하고 있거나 즉시 취득 가능한 자산이어야 한다.

1.7.4. 1.7.3에도 불구하고, 국제간 거래 등 특별한 이유로 1.7.3에서 정한 자산의 범위를 벗어난 적격 담보물을 정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내역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담보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5 1.7.2내지 1.7.4의 조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담보관리와 관련된 업무일체를 제3의 기관에 담보물건의 제공의무와 함께 위탁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아닌 수탁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관계는 수탁기관을 금융회사로 본다.

## 1.8 현금담보물

: 금융회사는 적격담보물의 일종으로 현금(대외지급수단인 외국환을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 1.8.1 현금담보물의 경과이자

: 현금담보물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과이자를 계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현금담보물을 교환하기 전에 확정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이자율의 확정이 고정금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쌍방이 어떠한 오해도 없이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 2. 증거금의 계산

: 증거금 지급 및 수취를 위한 증거금의 계산은 사전에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개별거래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용될 개별 담보물 및 이미 교환된 담보물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시장 참여자가 표준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한다.

### 2.1 신규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및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 신규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은 유효일(Effective Date)로부터 증거금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 2.2 만기 도래 또는 중도 종결된 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및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

: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에 종결된 거래는 해당거래가 종료된 시점(또는 결제가 완료된 시점)에 증거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 2.3 증거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

: 거래상대방과 쌍방간에 이루어진 계약 중 기본계약서 등에서 담보를 요구 할 수 있는 모든 거래는 증거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2.4 담보물의 가치평가

: 담보물의 가치는 일별로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할인비율(Haircuts)을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의 경우 경과이자를 포함하나 현금담보물(원화 및 대외결제수단인 현금을 포함한다)인 경우 경과이자를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치평가 절차에는 양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 2.5 거래의 평가

: 증거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거래에 대한 평가는 일별로 공정가치평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 거래당사자 쌍방이 별도로 정한 내역(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 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계산대리인이 제시한 평가가치와 금융회사가 산출한 공정가치와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증거금의 요청 및 대응

: 증거금의 요청 및 대응은 거래상대방 쌍방의 권리와자 의무로서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3.1 데이터 가용성(Availability)

: 금융회사가 증거금 계산에 사용하는 각종 데이터는 증거금 지급 및 수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3.2 데이터 정합성(Integrity)

: 금융회사는 증거금 계산에 사용되는 각각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3 증거금요청시 포함되어야 할 내역

: 금융회사가 증거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의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금융회사의 증거금 업무담당자
- ② 거래상대방의 증거금 업무담당자
- ③ 평가기준일
- ④ 기준통화로 표기된 최소이전금액 (Minimal Amount to Pay/Receive)
- ⑤ 신용공여한도(Threshold), 기준통화로 계산된 증거금면제금액
- ⑥ 개별증거금(Independent Amount)
- ⑦ 총평가금액 (Net Market Value of the portfolio)
- ⑧ 증거금요청금액
- ⑨ 기존에 쌍방 간 교환한 담보의 내역(평가)

### 3.4 담보요청 내역 검증

: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담보 요청 내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3.5 증거금 지급요청에 대한 대응시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거금 지급요청 내역은 즉시 검토되어야 하며, 지체 없이 정해진 담보물이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대의 차이 등에 의하여 신용보강약정서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해당내역을 준수 하며 이 경우에도 업무절차의 지연은 최소한으로 억제 되어야 한다.

### 3.6 증거금 지급요청에 대응할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역

: 금융회사가 증거금 지급요청에 대응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의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금융회사의 증거금 업무담당자
- ② 요청사항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동의여부
- ③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물의 수량(금액)
- ④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물의 유형(증권인 경우 증권코드 등)
- ⑤ 결제일자
- ⑥ 총평가금액 (Net Market Value of the portfolio)

### 3.7 증거금 지급요청에 대한 조정

: 증거금 지급요청에 대한 조정(재검토)요구는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동일한 영업일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7.1 거래당사자 쌍방은 증거금 지급과 관련된 이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 합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4. 담보물의 결제

: 담보물의 결제업무는 적절하고 정확한 절차를 통하여 담보물이 지급 및 수취 되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1 담보물 결제 절차

: 거래당사자 쌍방 간에 이전할 담보물의 유형이 결정되면 쌍방은 해당 담보물에 적절한 결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4.2 담보물의 대사

: 담보물과 관련된 지급·결제업무가 수행된 경우 해당 내역은 즉시 담보관리 업무에 반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과 해당 내역을 수시로 대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과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담보와 관련된 이견(분쟁)의 해소

: 금융회사 및 거래상대방은 담보업무와 관련된 이견(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쌍방 간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5.1 이견(분쟁) 해소를 위한 거래의 대사

: 금융회사는 증거금 대상이 되는 거래의 추출 및 검토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담보와 관련된 이견(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래를 대사하는 업무 등에 즉각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거래의 대사는 사전에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2 이견(분쟁) 원인의 파악

: 금융회사는 담보와 관련된 이견(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5.4 대사가 완료된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실행부문의 접근

: 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대사 내역 및 가치평가 세부 내역에 대해서 거래실행부문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5.5 담보와 관련된 이견(분쟁)의 모니터링, 관리, 보고

: 금융회사는 자신 및 거래상대방의 관점에서 모든 이견(분쟁)에 관한 사항이 모니터링, 관리, 및 보고되어야 한다.

### 5.6 통제

: 금융회사는 이견(분쟁)내역에 대하여 상급관리자가 이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경영진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6. 담보물의 지급결제 불이행

: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거래상대방 쌍방의 모든 담당자는 해당상황을 인지하고 지체없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패횟수를 줄임으로서 거래상대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 6.1 문제의 인지(Identification)

: 금융회사는 모든 형태의 담보 지급결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6.2 통지

: 담보물의 결제실패와 관련된 상황이 인지된 경우,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6.3 해결기간

: 결제실패와 관련된 문제는 즉시 또는 다음 결제일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4 보고 및 조치

: 담보물의 결제실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기록되어 상급관리자, Credit Officer 및 관련 임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금융회사는 문제의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 양도(거래의 이전)

: 담보 지급 및 수취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제3의 거래상대방에게 양도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본래의 거래상대방과는 특정거래의 종료, 신규거래상대방과는 신규거래개시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7.1 양도의 확인

: 금융회사는 거래가 양도(이전)되는 경우 해당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보강약정서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거래를 양수받는 자와 금융회사간의 체결된 기본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 신규거래/중도청산/신용사건/거래의 압축(Compression)

### 8.1 신규거래

: 신규거래는 거래성립 후 지체없이 담보관리 업무에 반영되어야 하며, 신규거래 초기에 교환하기로 한 현금(선취수수료, upfront fee)등은 결제일까지 담보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8.2 중도청산

: 중도청산되는 거래도 결제일 전까지는 증거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8.3 신용사건

: 신용사건의 발생으로 조기청산되는 거래의 경우도, 중도청산과 마찬가지로 결제일 전까지는 증거금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8.4 거래압축(Compression)

: 기존거래의 삭제 및 압축된 거래의 등록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역은 쌍방이 서면으로 동의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9. Rehypothecation(담보물의 재사용)과 대체

: 담보물 재사용권한의 부여 및 기 제공된 담보물에 대체 등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강약정서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금융회사는 이러한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9.1 담보물의 재사용과 관련된 신용보강약정서

: 신용보강약정서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이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준거법이 뉴욕법인 경우에 있어서도 재담보로 인하여 담보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물을 규율하는 준거법(원화채권 및 외화채권)의 차이로 인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Dual Law CSA등의 특약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2 증권의 재사용

: 담보물의 재사용과 관련된 적법한 권리를 부여받은 증권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담보물 재사용 시 기본계약서에 따른 담보물의 결제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 즉 재사용되는 담보물의 본래 제공처에 해당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 내에 제공받아 반환할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9.3 대체

: 거래쌍방은 담보물을 대체하고자 하는 요청에 대하여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대체업무는 지급 및 수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시차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 9.5 반환

: 담보물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받았던 자는 요청된 담보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물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해당 담보물을 제공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10. 포트폴리오의 대사

: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은 정기적으로 대사되어야 한다. 단, 대사결과 누락되거나 삭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추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사결과 쌍방의 거래내역이 일치하더라도 거래확인서등 거래관계를 법률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자료가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사업무는 거래내역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환된 담보물에 대하여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11. 경과이자 처리

: 담보목적으로 현금자산을 수령(지급)한 경우 기본계약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과이자를 지급(수취)하여야 한다.

### 11.1 경과이자의 지급

: 경과이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간으로 산출하여 매월(초) 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익월에 적용될 원본을 계산할 때 결제되지 않은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쌍방 간 명시적으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1.2 경과이자의 계산

: 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변동금리(구조화된 금리 포함)를 정한 경우 해당 산출값이 음수인 경우에도 경과이자 는 영(0)으로 하여야 한다.

## 12. 직무분리

: 증거금의 계산 및 담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요한 업무로 거래실행부문과는 독립된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12.1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의 분리

: 증거금의 계산, 담보물의 이전을 요청하거나 요청받고 이를 최종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담보물의 지급·결제를 담당하는 인력은 통상적인 장외 파생상품거래에서의 거래실행부문과 후선관리부문에 준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참고10〉 **영업 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 예시**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투자자보호제도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에만 적용되는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가 추가로 적용됨

구분	투자자보호제도	내용
일반적 투자자보호원칙	신의성실의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이익보호 의무
	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상품만을 투자권유 하여야 함
	설명 의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시 투자 관련 중요사항,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
	단정적 판단근거 제공금지	일반투자자 상대로 투자권유 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근거 제공 금지 의무
	손해배상책임	설명 의무, 단정적 판단근거 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부당권유금지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동의하에 투자권유를 해야 하는 원칙
	투자권유준칙 마련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준수해야 할 준칙을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의무
	매매형태 명시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자기가 매매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할 의무
	자기계약 금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되고 동시에 상대방의 중개업자가 될 수 없음
	시장매매의무	자신이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파생상품에 대하여 강화된 투자자보호원칙	적정성 원칙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정한지 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
	투자권유대행 금지	모집인 등에게 파생상품 투자권유를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행위 금지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파생상품 투자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할 의무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은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전문투자자로 취급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일반투자자로 취급
	장외파생상품 적색경고제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투자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시각화된 투자위험정도 표시



## 〈참고11〉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관련 세부기준\*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제1항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6의2조에서 규정하는 장외 파생상품의 위험회피목적 거래에 대한 실무적용기준으로 활용

### 1.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 관련 규정

####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 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2.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실무적용 원칙

**【1】** 위험회피 대상인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시 파생상품의 PayOff가 **전체 또는 부분적(비율 및 구간)**으로 기초자산의 손익 변동과 반대의 손익 변동을 나타내는 경우 위험회피목적 상품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1> 선물환 등과 같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체 구간의 손익이 기초자산의 손익변동과 반대 방향인 상품뿐만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만 기초자산의 손익변동과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는 Range Forward 등의 상품도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포함됨



☞ <예시 2>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위험회피 목적의 정형, 비정형의 장외파생상품은 자통법 시행 후에도 금지되는 상품은 아님

**【2】 오버헤지는 위험회피목적 거래에서 제외됨**

- 위험회피대상인 기초자산의 규모를 초과하는 거래는 위험회피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레버리지 등이 있는 상품은 최대 레버리지 적용을 가정하여 오버헤지를 판단

☞ <예시> 1,000만불의 위험회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레버리지 2배인 KIKO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대 장외파생상품 계약 가능 명목원금은 500만불임

**【3】 ‘위험회피대상 자산 및 금액’의 확인방법**

- 위험회피대상관련 건별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로 확인된 금액 범위 내
- 위험회피대상관련 개별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

**【4】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 한도 산출 방법**

- **【3】** 에서 확인한 위험회피대상 금액 - 당·타 금융회사 기체결 거래실적

**【5】 위험회피대상 자산이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품파생상품 등의 경우 Proxy Hedge 도 가능**

**【6】 기체결한 ‘위험회피목적’ 파생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하거나 기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대거래시에는 위험회피목적을 판단하지 않고 거래 가능**



〈참고12〉

## 내재파생상품의 개념 및 분리회계

### 1. 개념

-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당해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text{주계약} + \text{내재파생상품} = \text{복합상품}$$

### 2.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 요건

-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 (2)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 (3)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즉, 당기 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 3.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 시 고려할 점

-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을 식별하고 주계약에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며, 분리대상 내재파생상품은 최초인식시점과 그 이후 기간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참고13〉

**위험회피회계 적용 및 중단 요건****1.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

- (1)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된 특정 위험회피관계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 (3)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 (4)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5)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2.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 중단 요건)**

- (1)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청산·행사된 경우. 다만, 위험회피수단을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하거나 만기연장하는 것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청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중단 요건)**

- (1)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청산·행사된 경우. 다만, 위험회피수단의 다른 위험회피수단으로 대체나 만기연장이 위험회피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위험회피수단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소멸이나 청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4)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참고14>

## 장외파생상품 적색경고제

### 1. 적용대상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 2. 장외파생상품 분류기준

- 손실범위 수준 및 구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분류
  -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분류기준과 동일한 분류 기준 적용
    - ① 원본 이상의 손실은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노란색 경고문
    - ②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주황색 경고문
    - ③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거래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상품으로서  
I,II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색 경고문

### 3. 표시방법

- 상품설명서 등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 상단에 표시(상품분류 및 손실가능성에 대한 문구와 색깔을 표시)

<예시>

장외파생상품은 초고위험 상품이며, 同 상품은 장외파생상품 위험 등급(I~III) 중 가장 높은 단계인 III단계\* 상품에 해당합니다.

\* III단계: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거래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상품으로서 I,II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스티커, 형광펜, 인쇄, 기타 투자자가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 금융회사가 선택



〈참고15〉

## ELS 발행 및 운용기준

### 1. 적용대상

- 기초자산에 개별주식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원금非보장 공모 추가연계증권(ELS)을 대상으로 함. 다만,
  - 셋 이상의 개별주식 가격의 평균을 평가가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공모펀드에 편입되는 사모 ELS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안 중 「1. 만기시 수익지급조건 개선」 만이 적용되어야 함

### 2. ELS 제도개선 내용

(만기시 수익 지급조건 개선)

-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경우
  - 최종만기 평가일을 포함한 직전 3영업일 이상 종가의 평균값 또는 최종만기 평가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만기평가가격으로 사용\*

\* MAX(A,B,C) 와 같이 종가 평균값 등에 비해 i)가격결정조건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와 ii)시세관여 개연성이 없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음

※ 3일 이상 종가의 평균가격 등을 만기평가가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1. 신고서 제출일 전전월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이 기초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2. ELS 발행금액(공사모를 포함한 일별 발행금액의 합)이 당해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전월의 1개월간 일평균 개별 기초자산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사례)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100억원을 '09.11.1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09.9월말 삼성전자 및 포스코는 시가총액 20위 이내의 종목이며 9월중 일평균 거래대금을 각각 150억원과 60억원이라고 가정)

☞ (적용) 기초자산에 포함된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모두 전전월말 기준 시가총액 20위 이내이나 발행금액(100억원)이 기초자산에 포함된 포스코의 일평균거래대금(60억원)을 초과하므로 평균만기를 사용하여야 함

**(백투백 헤지시 ELS 발행사 의무 강화)**

ELS 발행시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아래의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하여야 함 (만기평가가격 산정시 평균가격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

① **(위험회피거래상대방 실명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헤지하는 금융회사명을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공지**

- Bridge 금융회사가 있는 경우 최종 운용사와 Bridge 금융회사를 모두 명시

- 헤지운용사는 만기이전에 변경될 수도 있음을 명시

② **(부분인수제)** 백투백 거래시 ELS 발행증권사는 **발행액의 3% 이상을 인수하고 상환시점까지 보유**

- ELS 백투백 계약금액이 '103억원'인 경우 ELS 발행금액은 '100억원' 이하로 함

**(ELS 운용지침 마련)**

자체 헤지를 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사가 **동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운용지침(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

1. ELS 등 헤지관련 주식은 여타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내부적으로 구분 가능할 것
2. ELS 만기평가일(또는 조기상환평가일)에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한 기초자산 시장 가격의 의도적인 조정 금지
3. ELS 헤지관련 주식 주문계좌를 사전에 확정하고 변경시 기록하는 절차 마련



<참고16>

##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관련 법규정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관련 법규정
[2]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li> <li>- 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인가요건)</li> </ul>
[3]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li> </ul>
[4] 직무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28조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li> <li>-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제4-6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4-7조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li> </ul>
[5]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86조의2 (위험회파목적 거래)</li> <li>-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제5-50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li> <li>-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별표3-2〉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별표9-2〉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별표 15-2〉 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기준</li> </ul>
[6] 파생상품거래위험대비 적정 자기자본의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li> <li>- 금융투자업규정 제3-1조 (회계처리기준)</li> <li>-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별표3-2〉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li> </ul>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관련 법규정
[8] 거래 및 투자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288조의2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li> <li>-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li> <li>-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거래절차)</li> </ul>
[9] 영업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제46조 (적합성 원칙 등) 제46조의2 (적정성의 원칙 등) 제47조 (설명의무) 제49조 (부당권유의 금지) 제50조 (투자권유준칙)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9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li> <li>- 금융투자업규정 제4-8조 (재권유금지의 예외 등) 제4-18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 제공·수령기준) 제4-36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제4-37조 (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제4-93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li> <li>- 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의2 (파생상품거래)</li> </ul>
[10] 파생상품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법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li> <li>-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3조의2 (파생상품의 필요공시사항) 제73조의3 (파생상품 거래조건의 표시방법) 제74조 (복합금융상품의 공시방법)</li> </ul>